

결정서

사건 : 2015-665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REDACTED]

소속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전 [REDACTED] 영재학교)

직위 교감(전 교장)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오범석

피청구인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심사일 : 2016. 2. 24.(출석)

결정일 : 2016. 2. 24.

피청구인이 2015. 12. 4. 청구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5. 12. 29.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12. 4. 청구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경과

가. 청구인은 1988. 3. 1. 인천광역시교육청 강화고등학교에 신규 임용되어 2006. 3. 1. 경기도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로 전직하였고, 2010. 9. 1. 경기 과학고등학교 교감으로 전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1. 3. 피청구인의 [REDACTED] 영재학교 교장 공개모집에 합격하여 2015. 3. 1.부터 위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위 학교장 공개모집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가 표절된 것이라는 제보를 ○○단체로부터 접수하였고, 동 사안을 2015. 11. 3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2. 3.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12. 4. 청구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1. 21. 청구인에게 복직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처분 사유

청구인은 2015. 3. 1.자 [REDACTED] 영재학교 교장 공개 모집 당시 「지원자 서약 및 동의서」에 제출하는 지원 서류에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며 표절로 판정되었을 시 지원 자격 박탈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서약한바 있으나(2014. 11. 14.), 이후 경기○○고등학교 한□□ 교장의 학교경영계획서를 17개 항목에서 표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되었다.

3.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이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맡고 있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루어지는 임시적인 처분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교장 공개 모집 시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나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의 부존재

- 1) 청구인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는 최종본이 아닌 미완성본이 잘못 제출된 것이며, 청구인은 이후 최종본을 파일로 제출하였다.
- 2) 청구인이 표절하였다는 한□□ 교장의 학교경영계획서는 청구인이 경기과학고등학교 재직 시 한□□ 교장과 공동으로 작성한 공동저작물이다.
- 3) 청구인이 작성한 표절확인서는 허위사실 고지를 통한 강요와 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

4. 판단

가.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제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두5945 2003. 10. 10. 판결 참조),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정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행위 등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83누218 1985. 2. 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교장 공개 모집 당시 학교경영 계획서를 표절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직위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기타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한편, 피청구인은 대법원 판례(87누560 1987. 9. 8. 판결) 및 을제18, 19호증 발령통지서 기재를 들어 청구인이 2015. 1. 21.자로 복직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이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5조, 제29조, 제30조에 따르면 직위해제 중인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 제한과 봉급 감액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승급제한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고 감액되었던 봉급이 소급하여 지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5. 1. 21.자로 청구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승급 제한과 봉급 감액의 불이익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그러한 불이익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¹⁾.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

1) 위 대법원 판례는 직위해제 처분 시 승급 제한과 봉급 감액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던 당시의 판결임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피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24.

교 원 소 청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성삼제 성삼제

상임위원 류정섭 류정섭

위 원 양일선 양일선

위 원 김동춘 김동춘

위 원 문영기(불참)

위 원 박범덕 박범덕

위 원 김효신 김효신

위 원 손종학 손종학

위 정본임.

2016. 3.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